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욱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574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3월 30일
발 의 자: 이상욱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태수,
남창진, 유만희, 윤기섭,
이성배, 최민규, 허 · 훈,
황철규 의원(13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편의시설의 관리·점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전 점검 및 실태점검의 주체와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 이에 편의시설 설치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나. 시장의 의무를 책무로 변경하고, 시설주 협조의무를 강화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편의시설 설치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라.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 마. 사전점검 및 실태점검의 주체를 시설주관기관으로 정비하고 점검 체계를 강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를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시설주관기관”이란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시장의 의무)”를 “(시장의 책무)”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5조 및 제6조”를 “제8조 및 제9조”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를 “등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편의시설 설치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시행과 관하여는 법 제12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편의시설 설치의 촉진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설치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5조) 제1항 중 “시장은 법 제7조”를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7조”로,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를 “설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시장”을 각각 “시설주관기관”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시설주관기관은 제8조에 따른 점검”으로,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을 “법 제2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시설주의 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상 시설의 사전점검 후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은 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 및 자치구청장이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시설주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1조(중전의 제8조) 중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대상”을 “따른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으로, “개인에 대하여”를 “개인에게”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9조)의 제목 “(교육 실시)”를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발간”을 “발간하고 홍보”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0조)의 제목 “(협력체계 구축 등)”을 “(협력체계 구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2조(정의) ----- ----- <u>다음과 같다.</u></p> <p>1. “<u>장애인등</u>”이란 「<u>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u>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u></p> <p>2. “<u>시설주관기관</u>”이란 <u>서울특별시 장 및 구청장을 말한다.</u></p> <p>3. “<u>시설주</u>”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u>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u></p>
<p>제3조(<u>시장의 의무</u>) ①·② (생략)</p>	<p>제3조(<u>시장의 책무</u>) ①·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u>시설주의 의무</u>) ① (생략)</p> <p>② 시설주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및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4조(<u>시설주의 의무</u>)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제8조 및 제9조</u>----- ----- <u>등 필</u> <u>요한 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u> ---.</p> <p>제5조(<u>다른 조례와의 관계</u>) <u>장애인등</u></p>

<신 설>

<신 설>

제5조(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 시

의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편의시설 설치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시행과 관하여는 법 제12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편의시설 설치의 촉진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설치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7조-----

설이 완공되기 전에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8조제2항보다 완화된 기준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점검대상 시설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점검 결과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지 않았거나 완화된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시설의 실태점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주의 의무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전점검 후에 실태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치구청장에게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설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

-----.

③ 시설주관기관-----

-----.

④ 시설주관기관-----

-----.

제9조(편의시설의 실태점검)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시설주의 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상시설의 사전점검 후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은 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 및 자치구청장이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8조에 따른 점검 -----
----- 법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7조 (생 략)

제8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대상에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실시)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생 략)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

-----.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시설주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11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
----- 따른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
----- 개인에게 -----

-----.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

----- 발간하고 홍보--.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협력체계 구축) (현행과 같음)

<삭 제>

다.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사전점검 및 실태점검 주체를 '시장'에서 '시설주관기관'으로 변경하고,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 대부분의 개정 내용이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제7조(실태조사¹⁾)는 해당부서(장애인자립지원과) 확인 결과 국가단위 실태조사가 5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으며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²⁾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신 동 규

☎ 02-2180-7955

e-mail : abasiclife@seoul.go.kr

※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

1) [기존 조사자료 활용 가능성 검토] 해당 실태조사는 자료확인 결과 국가단위 정책기초 자료이나 지역별 조사결과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이를 지역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경우 서울시 차원의 별도 실태조사 실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실태조사 금액(30,000~4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 [국가단위 실태조사 서울시 재정부담 규모] 가장 최근 조사인 2023년의 경우 1,200,000천원 가량 서울시가 부담한 바 있고, 2028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금액을 부담할 것으로 보임